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 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연월일 : 2006. 11. 3.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2006. 9. 22. ~ 10. 12.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20퍼센트”를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16조의2제3항”을 “영 제16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호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위원회”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또는 분할납부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생략)</p> <p>1.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30일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p> <p>2.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30일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p> <p>3.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1년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p> <p>4. 분할납부허용일로 부터 2년초과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 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의무자는 분할납 부를 신청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31조 의 규정에 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인 경 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 다.</u></p> <p>③ (생략)</p> <p>제7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사업 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 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영 제 16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 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100분의 20</p> <p>2. 100분의 30</p> <p>3. 100분의 30</p> <p>4. 100분의 20</p> <p><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 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 ①---- ----- ----- ----- 영 제 16조의2제4항 ----- ----- -----</p> <p>②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세출)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 계획,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생략) 	<p>제11조(세출)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 3. -----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 ① 부담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 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는 날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법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 가. 도로관계 법령에 의한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나.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 다.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